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,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09. 03.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처분일)	처분사유	처분 근거
성지종합 건설(주) (강연식)	경기도 시흥시 시청로68번길 14, 301호 (장현동)	건축공사업 (10-3300)	영업정지 5개월 (‘26.9.21.~ ’27.2.20.)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[자본금 미달(‘22.12.31.기준)]	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
(주)우리 종합건설 (황상국)	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20-3, 202호	건축공사업 (10-3317)	영업정지 6개월 (‘26.9.21.~ ’27.3.20.)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[자본금 미달(‘22.12.31.기준)]	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

[안내사항]

- 이 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(문서도달일)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(공고일)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(문서도달일)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(공고일)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